

# 朝鮮朝 濟州島 教育施設

梁 鎮 健\*

## 目 次

1. 教育施設の 性格
2. 濟州島の 郷校
3. 濟州島の 書院
4. 其他 教育施設

## 1. 教育施設の 性格

教育の場(field)인 학교의 원시적 형태는 가정 외의 교육시설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인정된다. 가정 외의 교육시설의 출현은 서양교육사 측면에서 볼 때 종족적 사회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종파적으로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던 학교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관청을 만들고, 행정에서 종교와 교육의 분리에 구체적인 일보를 내딛기 시작함으로써 교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1786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즉위한 다음 해, 사법성 내에 학무국(Oberschulkollegium)을 설치하였던 프로이센이다.

\* 제주대학교 전임강사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이센처럼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원칙이 성문으로 공포된 것은 근대부터이지만 조선조가 개국하면서 고려조보다는 훨씬 진전된 교육시설에 대한 감독규정들이 시행되었다. 조선조는 周의 六卿說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를 六部로 구분하여 정치를 하려는 입장을 따랐던 것인데 六曹 가운데 禮曹가 학교와 과거 등의 교화 문제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선조는 왕조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력히 구축하기 위해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보급에 진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일찍부터 체제의 제도적 정비라는 차원에서 학교교육이 확충되었다. 鮮初 흥학운동은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인물이 현명한 관료가 될 수 있고 이들을 중앙관료로 임명함으로써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념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문교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변방의 제주도 역시 학교교육 제도가 정비되고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P.W.Musgrave에 따르면 한 나라 교육제도의 발달은 사회변화의 주요한 예증이다.<sup>1)</sup> 따라서 조선조 제주도 교육시설의 변천을 추적함은 당대 법정화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공권적 작용으로서 교육의 면모는 물론이요 그같은 교육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회적 세력을 통해 사회변화의 한 단서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 2. 濟州島의 鄉校

### 가. 建置와 變貌

#### 1) 鄉校의 建置

향교는 조선조 지방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교육행정사 측면에서 향교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향교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1) Musgrave, P. W., "A Model for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Educational System from 1860", in P. W. Musgrave (ed), *Sociology, History and Education*, 1970, p.16.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존재한 유일한 관학이고 공자를 奉仕하기 위해 마련된 文廟가 소재한 공적 기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군현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지방교육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조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체제를 지지하게 할 교화정책도 아울러 펴 나갔다. 교화정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방민을 교육하고 교화할 학교의 설립이었다. 따라서 건국 초부터 학교를 '敎化의 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大學으로 수도에 성균관을 두어 고급인재를 양성했고, 小學으로 중앙에 四學과 지방에 향교를 두어 연소한 京, 外子弟들을 길러 냈던 것이다.<sup>2)</sup>

그리하여 고려 인종 5년(1127)에 등장한 향교가 조선조에 이르러 전국적인 확대를 보게 되었으며 성종대에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었지만 제주도에 태조 원년(1392)에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졌었다.<sup>3)</sup> 이것은 지방 향교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였다. 태조 3년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학교에 10세 이상의 토관 자제들을 교육시켜 國試에 나가게 하였다.<sup>4)</sup>

향교의 설립과 함께 병행된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으로 선초의 對제주도 정책과 관련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했던 중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旌義, 大靜의 兩縣은 태종 16년(1416)에 分置되어 그 후 곧 향교가 설치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 3개의 향교가 설립되었다.

## 2) 鄕校의 移設

제주향교의 처음 위치는 가락천 서 쪽 뚝 위에 있었는데 선조 15년(1582) 金泰廷 목사에 의하여 향교가 민가의 뜰에 있고 사격장이 가까워서 승경의 분위

2) 鄭道傳,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上, 禮典, 學校.

3) 《新增東國輿地僧覽》卷38, 濟州牧 學校案, 「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鄕校再造」

《增補文獻備考》卷209, 學校考8, 鄕學,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4) 《太祖實錄》卷5, 3年3月, 丙寅, 「都評議使司上言…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上從之」

기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성 안 동남 쪽 청풍대 옆으로 이설하였다.<sup>5)</sup> 현종 9년(1668)에는 李續 목사에 의하여 옛 가락천 서 쪽으로 다시 이설하게 되었는데<sup>6)</sup> 경종 4년(1724) 정월에 성 안의 큰 화재로 유실되어 愼惟益 목사에 의해 가락천 동 쪽으로 이설되었다.<sup>7)</sup>

그 후 영조 31년(1755) 洪泰斗 목사는 향교가 비습진 곳에 있다고 하여 광양 쪽으로 이설하였고<sup>8)</sup>, 순조 27년(1827) 沈英錫 목사가 광양은 사면으로 바람을 받아서 공부하는 데 불편하다 하여 조정에 이설할 것을 품신하였는데, 후임으로 온 李行教 목사에 의해 지금의 자리인 용담동 쪽으로 이설되었다.<sup>9)</sup>

정의향교는 태종 16년(1416) 정의현이 설치되면서 본읍인 고성리에 설치하였으나 세종 5년(1423) 현청을 성읍으로 옮기면서 향교도 이설되었다. 처음에는 서문 밖에 건립하여 그 곳을 향교골이라 하였으며 영조 14년(1738) 羅億齡 현감에 의하여 증수되고 순조 9년(1809) 呂哲永 현감에 의하여 성북 쪽으로 이설하다가 마치지 못하였으며<sup>10)</sup> 현종 15년(1849) 張寅植 목사에 의하여 현 위치로 이설되었다.<sup>11)</sup>

대정향교는 태종 16년(1416) 현이 설치되면서 북쪽 성안에 건립하였다가 동문 밖으로 이설하였다. 그 후 현종 10년(1669) 趙門赫 현감이 증수하고 숙종 10년(1684) 李希龍 목사가 또 증수하였다. 영조 48년(1772) 李寬 현감이 명륜

- 
- 5)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十五年 春 牧使金泰廷 移建鄉校于嘉樂川東古齡田 初鄉校 在觀德亭下一里地 鄉校田 泰廷 以爲聖廟 在鄉校內 萬世瞻仰之地 而介處於閭 巷之間又當射候之場 非所以致崧敬之意也 遂啓請移建 功既訖而丁憂辭去」
  - 6) 上揭書, 「(顯宗)九年 牧使李瑱 移建鄉校 于嘉樂川西舊址」
  - 7) 上揭書, 「(景宗)四年…秋 牧使愼惟益 移建鄉校于嘉樂川東舊址 時大成殿 明倫堂 及齋舍 講堂并被火變 惟東西兩宇獲免 因啓請移建鄉校」
  - 8) 上揭書, 「(英祖)三十一年…洪泰斗以文廟卑濕 移建鄉校于廣壤 踵前牧使金夢奎議也」
  - 9) 上揭書, 「(純祖)二十七年 冬 牧使李行教 移鄉校于西域外 初 牧使沈英錫 以文廟基址 四面受風 啓請移建 未作而罷去 李行教踵而成之 官隸高相信 納付基地」
  - 10) 上揭書, 「(純祖)九年 冬 旌義縣監呂喆永 移建鄉校于城北 工未訖而以縣庭火變逮去」
  - 11) 上揭書, 「(憲宗)十五年 牧使張寅植 移建旌義鄉校于縣城內」

당과 부속 건물을 증수하고<sup>12)</sup> 현종 원년(1835) 朴長復 목사와 張時悅 현감이 증수하였다.<sup>13)</sup>

제주삼읍의 향교 이설 또는 증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빈번한 이설과 증수의 문제이다. 향교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 예컨대 향교의 移建, 重建, 重修, 位牌의 奉安과 陞黜, 祭禮에의 香祝下送 등은 반드시 禮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조에서 주관하여 처리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향교를 사사로이 이진하거나 위패를 손상한 守令, 校任, 校生 등은 처벌을 받았고 심하면 군현이 降號되는 예도 있었다.<sup>14)</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삼읍의 빈번한 향교 이설과 증수는 매우 예외적이다. 또한 그 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설 시기를 눈여겨 보면 명종이나 선조조 이후의 일들인데 명종, 선조조 이후는 사학인 서원의 융성으로 향교가 급속하게 廢弛되던 시기로서 법제 상으로도 續大典에는 教授, 訓導마저 혁파되어<sup>15)</sup>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교생도 지방 토족의 자제만으로 충원되던 것이 그 신분마저 완전히 변질되어<sup>16)</sup> 실질적인 지방교육은 서원이 대행하다시피 하던 때였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향교가 침체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빈번한 향교 이설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나. 規模 및 內容

### 1) 學田

그런데 향교는 관학이었기 때문에 學田이 지급되고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12) 上揭書, 「(英祖)四十八年…大靜縣監李寬 重修明倫堂」

13) 上揭書, 「憲宗元年 春 牧使朴長復 重修大靜鄉校」

14) 禮曹에서 鄉校에 대한 제반 조치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 「學校謄錄」 7卷이다.

15) 《續大典》, 吏典, 外官職條에 各道の 教授, 訓導는 「減」이라 되어 있고 「續大典」, 吏典, 取才條에는 「外教官今廢」라 하여 鄉校의 教授, 訓導는 革罷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 《仁祖實錄》卷14, 4年 11月, 庚寅條, 「古之校生 皆是簪纓世族 非今日雜類之比」

도 선초부터 향교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학전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정조 2년(1778) 목사 黃最彦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기록<sup>17)</sup>이 보인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급한 학전은 所有權이 아니라 收租權만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규모는 成均館 400結, 州府鄉校 7結, 郡縣鄉校 5結이었다.<sup>18)</sup> 학전 외에 향교의 중요한 경제기반 가운데 하나가 鄉校奴婢였는데 府의 향교는 30명, 大都護府, 牧의 향교는 25명, 都護府의 향교는 20명 그리고 郡縣의 향교는 각 10명이었다.<sup>19)</sup>

제주삼읍의 향교 역시 학전과 노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제주향교의 학전은 7결로 노비가 18명이었으며 대정향교는 학전이 5결, 노비가 4명 그리고 정의 향교는 대정향교와 마찬가지로 학전이 5결이고 노비가 4명이었다. 이로 보건대 노비 수는 모자란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sup>20)</sup> 제주삼읍의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향교에서는 학전 이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주삼읍의 향교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 2) 職制 및 構成

직제를 보면 濟州牧은 敎授(從6品) 1인, 訓導(從9品) 1인, 掌議 2인 有司 4명이 있고 兩縣에는 訓導가 각 1인, 掌議 2인 有司는 2인에서 4인이 있어서 교훈을 담당하였다.<sup>21)</sup> 세종 초 양현의 생도 수는 각각 50여인에 이르렀고 제주인 가운데서 학행이 뛰어난 자를 골라 敎導를 삼아 가르치게 하였다.

향교 교생의 정원은 「經國大典」에 의하면 제주목이 90인, 정의·대정 兩縣이 각각 30인이라고 하나<sup>22)</sup> 수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때에 따라 定額보다 적을 수도 있었으나 대체로 초과하는 예가 많았다. 「경국대전」 이전이지만 세

17) 金錫翼, 前掲書, 「(正朝二年)牧使黃最彦…設三邑學田敎士」

18) 《續大典》卷2, 戶典 諸田條.

19) 《經國大典》卷5, 刑典 外奴婢條.

20) 《學校膳錄》3, 甲辰(顯宗 5年)閏6.10. 《學校膳錄》6, 戊辰(肅宗 14年)6.1.

21)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條.

22) 《經國大典》禮典, 生徒條.

중 2년(1420)에는 양현 향교의 생도 수가 각각 50여인이나 되었으며<sup>23)</sup> 효종시의 생도 수도 제주향교인 경우는 정원을 초과하였고<sup>24)</sup> 정의현은 66인이나 되어 정원의 두 배를 넘고 있었으나<sup>25)</sup> 대정현은 15인으로 반밖에 안되었다.<sup>26)</sup>

숙종 30년(1704) 당시 제주향교는 東南城內에 이건, 奉安位數는 성군관과 동수였으며 교생 수는 350여인이었다. 정의향교는 縣西城內에 위치, 교생 수가 180여인이었으며 그리고 대정향교는 北城中에 있다가 城南籬山下에 이건, 60여인의 교생이 있었다. 이 때 李衡祥 목사는 향교의 건물, 위판, 시설 등이 낙후되었음을 상계하여 운허를 얻고 삼음 殿宇, 明倫堂, 東西齋, 祭器, 祭服, 床卓을 鋪陣하고 모든 위판의 파손은 개수하기도 하고 개조 및 개편하였다. 이 때 제주도의 유생 수는 제주가 277명, 정의가 161명 그리고 대정이 42명이었다.<sup>27)</sup>

또한 정조 때(1793) 읍지<sup>28)</sup>에 의하면 제주향교에는 額內校生이 150명, 額外校生이 33명, 靑衿儒生이 163명이고 정의향교는 액내교생이 30명, 액외교생이 20명, 別置居接生이 15명, 청금유생이 240명이었으며 대정향교는 액내교생이 30명, 액외교생이 70명, 별치거접생이 5명 그리고 청금유생이 110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校生

원래 액내교생이란 정액 내의 교생으로서 교생의 정액은 「경국대전」에 府·大都護府·牧은 각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sup>29)</sup> 이를 토대로 보면 제주향교의 액내교생은 정액을 넘어선 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액 규정은 양반에게만 적용될 뿐 非양반에게는 해

23) 《世宗實錄》卷10, 2年11月, 己卯, 「濟州京在所上言 大靜旌義二縣 始置鄉校 兩縣生徒 各五十餘人 請選州人 經明行修者爲教導」

24) 李元鎮, 《耽羅誌》, 「敎生之數 過於州額 而志學者少」

25) 上揭書, 旌義縣 學校條, 「鄉校在縣南城內 校生時水 六十六人」

26) 上揭書, 大靜縣 學校條, 「鄉校 舊在北城內 中移東門外 環移西城內 今移城南籬山下 校生時數 十五人」

27) 李衡祥, 《南宦博物志》, 誌文條.

28) 《濟州大靜旌義邑誌》, 參照.

29) 《經國大典》, 卷3, 禮典 生徒條.

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액내교생은 양반이며 액외유생은 서얼 또는 평민이라는 구별은 서원의 등장과 발달이 양반들의 향교 천시를 가증시키게 되면서 허물어지게 되는데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점차 비양반이 액내 및 액외교생을 차지하였다. 특히 인조조에 들어 새로 바뀐 군역제도를 통해 良役人의 확보를 위해 校生考講에 대한 원칙이 새롭게 마련되어 낙강한 교생을 신분에 구애없이 군역에 충당하려고 하자 신분 특혜를 고수하려는 양반들이 고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금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유생이라 호칭하였는데 이것이 곧 청금유생이다.

영조 14년(1738) 洪重徵 목사가 선비를 대접하고 지위와 문벌이 있는 10여 가문을 선택하여 청금안을 세워 토목 역사를 면해 주었듯이<sup>30)</sup> 제주도에서도 군역을 모면할 대책을 모색하여 양반임을 입증해 주는 향안에 입학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청금록의 입안에 신경을 썼던 것 같으며 결국 정조조 읍지에 기록된 교생들 가운데 액내,외교생과 별치거점생의 구별은 명확한 것이 아니며 많은 수의 청금유생은 兩班士族의 신분유지 노력과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다. 運用의 弊端

특히 정의와 대정향교의 상당 수에 달하는 청금유생들은 당대 청금록의 문 제점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청금안이 설치된 것은 그 유래가 오래지만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洪重徵 목사에 의해 다시 설치되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숙종조와 정조조의 제주삼읍 교생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청금안 설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錫翼은 「청금안이 설치되면서부터 매일 학문을 강독하는 풍습이 폐지되었고 사람을 논하여 추천하지 아니하고 문벌을 숭상하는 습속이 나왔으며 선왕의 학문을 일으키고

30) 金錫翼, 前掲書, 「(英祖)十四年…洪重徵 特士以禮舉 青衿生立案 勿責土木之役」

선비를 기르는 본 뜻을 구원하지 못했다」<sup>31)</sup>고 통박하였다.

결국 교생고강을 강행함으로써 향교의 청금록 작성을 부추킨 것은 인조 때 부터였는데 그러나 교생고강은 비록 의례적이긴 하지만 선초부터 행해졌었다. 선조 33년(1600) 12월 제주목사 成允文은 전염병과 흉년으로 제주 민호가 3분의 2 줄어 군정이 부족하므로 고강에 不通한 교생을 군역에 충당할 것을 주청하면서 고강에 불통한 교생 수를 제주 106명과 정의 2명이라고 지적하였다.<sup>32)</sup>

이러한 지적에서 보듯 勸學과 勸課에 목적을 두어 선초부터 교생고강이 행하여 오기는 했으나<sup>33)</sup> 향교교육의 쇠퇴와 교관의 무능 그리고 양반들의 향교교육 외면으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 밖에는 없었다. 교생고강에 불통한 수가 많았던 것은 군역을 모면해 보기 위해 향교를 이용했었던 당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예이다.

특히 선조 연간에는 방어상 수령이 무관으로 임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교 교생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교생들을 군역에 종사시키는 외에도 때로 천역에도 충당시켰는데 혼도 결원시 향교교생들이 혼도가 빨리 부임해 주기를 바랐던 것은 단적으로 말해 이런 천역을 면코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조는 祖宗朝의 법례라는 명분으로 校生考講充軍法을 강력하게 고집하였지만 신분의 특혜를 고수하려는 양반들은 청금록 설치 등을 통해 이에 반발함으로써 실재 고강 실적은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고강 실적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강을 회피하거나 고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자주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落講者의 소요도 고강을 형식적으로 그치게 하는 데 큰 이유가 되었다.

영조 21년(1745) 제주목사 尹植이 儒品과 假率들을 고강과 試射에서 떨어뜨

- 
- 31) 金錫翼, 《破閒錄》, 「以後課目講學之風遂廢不舉論人尚闕之習出而莫救卒使先生建學造士之本意至旅一敗塗地可謂得失不掩矣」
- 32) 《宣祖實錄》, 卷132, 33年 12月 壬申, 「濟州牧使成允文馳啓曰…本州校生類數過多 托名校籍 儼然閑遊 極爲無理 曾時讀考 講純粗以上 元額充數 其餘不通者 州一百六名 旌義縣二名 依法降定軍役事 啓下兵曹」
- 33) 《經國大典》, 卷3, 禮典 勸獎條.

려 騎兵과 歩兵에 應當하자 이들 낙강자들이 성이 나서 심야에 객사의 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곡을 하였던 사건<sup>34)</sup>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생고강을 논의하면서 낙강자의 원망이 일어난다면 이는 군역의 폐단보다 더 처리하기 힘든 것이니 낙강자들의 불만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군역 회피와 관련한 청금유생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관료의 보수화 경향과도 관계되어 있다. 홍학이 諸王之道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 선조 역대 왕들에 의해 자주 강조되어 인재 양성을 위한 향교 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육적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중앙 관료들에게 홍학절목, 홍학조건, 홍학지방에 대한 의견을 자주 개진하도록 요구되었던 것은 홍학운동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예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체제 정비를 통하여 집권세력이 보수화되면서 그 운영체제도 그런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해서 관료조직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홍학정책의 실시를 위한 관료들의 의견 개진이 자주 행해졌을지라도 근본적 개혁 보다는 비본질적 외형상의 변화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교는 인재양성을 위한 홍학기구로서 보다는 특권 양반층의 피역장소로 그 성격이 점차 변질되었던 것이며 청금유생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 라. 運用의 實際

군역 應當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제주향교에서 실시되었던 고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종시 기록<sup>35)</sup>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교의 유생은 정식으로 합격해서

34) 《英祖實錄》卷413, 21年 5月 癸未, 「領議政金在魯曰 濟州牧使尹植狀論 本島有品假律名色見落於考講試射降充 麒步則此輩發怒 深夜會哭於客舍 殿牌奉安之可云」

35) 以下 濟州鄉校에서 發見된 文件 參照.

들어온 유생인 接生 60명 외에 講論 받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은 모두 뽑아 들였고 시험은 고강의 경우 매달 10일, 20일 그리고 말일에 보았다.

시험일이 되면 향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학생인 齋生들은 것과 의복을 갖추어 시간에 맞춰 모였다가 목사가 나오면 동서로 나뉘어서 뜰 아래서 공손히 맞이했다. 목사가 明倫堂으로 물러나 앉으면 訓長, 掌議, 直月은 동 쪽 계단 아래에 서고 齋生은 서 쪽 계단 아래에 서서 마주보고 揖한 뒤 목사를 향해 차례로 올라 왔다. 훈장, 장의, 직월은 앞줄에, 재생은 뒷줄에서 목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목사는 이에 揖으로 답했다.

시험에 임할 때는 책상을 방 가운데 두고 목사는 북 쪽 벽에, 훈장, 장의, 직월은 동 쪽 벽에 앉고 재생은 서 쪽 벽에 앉았다. 직월은 나이가 많고 학문이 높은 이를 2명 뽑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책상 앞에 나아가 소리를 가다듬어 朱子の 「白鹿洞規」를 낭독하면 재생은 조용히 듣고 난 뒤에 고강했다. 40세 이하의 목사와 뒤돌아 앉아 글을 외우는 背講을 하게 하고, 40세 이상은 面講토록 하는데 이 때 음과 뜻 풀이 보다 글 뜻을 분명히 하고 句讀가 잘 되었는가를 보아 높고 낮음을 評했다.

벌칙으로는 선비가 한 번 不(최하 점수)를 맞으면 罰로 종이 10장을 내고 두 번 不를 맞으면 接生은 給料(장학금)을 안주었다. 이 때 接生이 아닌 사람은 罰紙 1卷을 내며 세번째 不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반면 한 번 純通(높은 점수)을 맞으면 상으로 종이 10장을 주고 두 번 純通을 맞으면 종이 한 권을 주었다. 세번째 純通을 맞으면 接外 儒生에게는 장학금을 接內의 유생에게는 종이 1권과 10장을 주었다.

양반들이 고강 때문에 액내교생 입학을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금록을 작성하면서까지 향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액내교생 때와 마찬가지로 향교가 유일한 관학이요 문묘가 있는 교화와 유학의 상징으로 향교에의 출입 자체가 신분유지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교는 비단 교화의 중심지이며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향교는 지방양반들이 출입하여 활동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향교는 지방양반들의 모임 장소로서, 공론의 소재지로서 지방

양반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는 활동근거지요 향촌기구였던 것이다.

수령들도 향교를 이용하여 군현통치의 원활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一邑의 大民들이 모여 官政의 시비를 내놓는 곳이 향교였으며 議政하는 곳이 향교였기 때문이다. 이에 향교에서 관정을 보좌하는 鄉所를 圈點케 하거나 향소를 선발하는데 향교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향교를 통하여 관정의 득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에서 작성한 각종 節目을 향교에 하나씩 頒布하거나 보관케 한 것도 향교의 한 군현 내에서의 위치나 기능을 이용한 실례라 하겠다.

#### 마. 附隨的 機能

원래 향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례를 위해 마련된 大成殿, 東·西廡 등 문묘와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숙하는 明倫堂, 東·西齋의 학교가 기본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는 향교의 두 기능인 제례와 교육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東齋와 西齋는 학생들의 기숙처로서 들은 위치의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격에 있어서도 구별되고 있었다. 하여 동재를 출입하는 유생을 일컬어 동재유생, 寒散庶孽 및 민의 우수자 가운데 서재에 출입하던 유생을 서재교생이라 하였다.<sup>36)</sup>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향교가 특이한 점은 효종조까지만 해도 西齋를 誠明이라하여 책을 보관하는 책고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문고가 불비되었던 환경과 함께 서재교생에 대한 당대 제주향교의 실정을 대변하는 예이기도 하다.

조선조는 주지하다시피 향교의 설립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신설 향교에는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책을 찍어 보내는<sup>37)</sup> 등 향교에는 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모집, 보관하는 교육문고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36) 安鼎福, 《雜同散異》, 鄉校約令.

37) 《文宗實錄》, 卷7, 元年 辛未四月甲戌條, 「禮曹啓 平安道慈城郡 新設鄉校 未有書冊 青令諸道板子所在官 印四書三經 各二件以送 從之」

렇듯 향교 등의 교육기관에 서책이 모여지기 시작한 것은 세종조 이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교에 서책이 증가되어 갔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를테면 서책 분실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향교에서는 서적목록을 작성하여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으니 향교에 따라서는 상당량의 서책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향교의 경우는 교육문고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재를 함께 쓰는 등 매우 협소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경영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숙종 6년(1680)에 들어 任弘望 목사에 의해 향교 옆에 책고가 세워지게 되고 책판이 개간됨으로써 제대로 교육문고가 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재를 책고로 쓴 예에서 시사하듯 제주도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보다도 특히 양반들이 향교에 많은 집착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인들은 과거라는 공식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양반으로 인정받는 중앙의 정책에 순응하였지만 실제 제주인들이 중앙관료직에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물론 제주인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과거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여 명에 들은 것으로 그칠 뿐 실제로 등용되어 제주도를 떠나 한양 또는 다른 지방에서 관료생활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향교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이들은 鄉職을 독점하였다. 향직은 제주도의 경우 양반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職役이다. 어쩌면 그만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의 職責과 향직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 3. 濟州島의 書院

#### 가. 書院의 發生

서원의 발생은 선초의 교학이념이 안고 있던 모순을 어떤 형태로나마 극복하려는 교육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선초의 관학적 교학체계가 안고 있던 모순에는 관학의 쇠퇴라는 교학체계의 붕괴와 土禍로 묘상되는 정치도의의 문란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사화 이후 서원은 교학진흥의 거부할 수 없는 필요책으로 부각되는데 특히 명중은 홍학을 위해 허물어져 가는 관학에 기대하기보다 서원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서원은 그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38)</sup> 그러나 결정적으로 서원제도가 정착되고 성립된 것은 退溪 李滉의 서원 보급운동에 의해서이며, 그는 서원을 士林의 講學과 藏修를 위한 교육기구로 성격지웠다.<sup>39)</sup>

이러한 서원의 전개과정은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세기 중엽부터를 斯文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던 講學優位의 제 1기라고 한다면, 서원의 본래 목적을 상실, 강학기구 대신에 祀賢爲主로 변모하였던 17~18세기를 제 2기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를 서원정비시대, 즉 제 3기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 정착된 서원제도는 고등교육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藏修優位

38) 예컨대 白雲洞書院에 대한 賜額 조치가 그것이다. 《明宗實錄》卷9, 5年 2月, 丙午條 參照.

39) 李滉 《退溪全書》卷42, 記, 迎鳳書院記, 「雖然上國之於書院 必擇儒先之知道者爲之山長主盟以倡率 故道術不分 而學者知所趨矣 若吾東方 則院敎新興 而此典未講 或入阮之士爲學之方 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 而惟科目 諱競之事是尚是務 則雖曰從事於書林藝苑之中 而求 聖賢之門牆 比如適 越而北轍 反之於心而無得 撥之於事而太乖 豈不可畏之甚耶 嗟乎 擇里擇術 孔孟之深戒 爲今之士 科舉之習 雖不能全廢 其祀聖賢爲己之學 正心修身之 道 則內外本末輕重 緩急之序 判然如 壤之不 矣 學者誠能審擇於此 而勇 決其取舍」

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의 서원은 養育人才의 교육적 기능 대신에 부차적이었던 祭享을 강조하게 된다. 書院享祀人은 반드시 斯文 有功人이 아니라도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어 서원의 濫設, 疊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정략적인 당쟁에 있었고, 自黨의 학문적인 정통성이 곧 서원 수에 의해 과시되는 까닭에 書院享祀는 바로 당권의 척도로 둔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서원의 역기능이 계속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고 드디어 大院君 집권시에 서원철폐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 나. 橋林書院

### 1) 五賢配享

제주도에 서원이 설립된 것은 제 2기에 해당되는 享祀優位 시대였다. 본격적 의미의 서원은 「道學書院」과 「忠節書院」으로 되어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書院」, 후자는 「祠」로 불리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서원으로는 제주도에 橋林書院과 三姓祠가 있었다.

굴림서원은 선조 11년(1578)에 趙仁後 판관이 중종 16년에 기묘사화로 유배와 賜死된 金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廟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sup>40)</sup> 成渾의 문인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林梯가 절도사인 부친을 빚고자 내도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記를 썼고<sup>41)</sup> 효종 10년(1659)에 李禴 목사가 제주유림 金晉鎔의 건의를 받아들여 藏修堂을 건립하자<sup>42)</sup> 현종 6년(1665)에 崔鎮南 판관이 김정묘를 장수당 남 쪽으로 옮기어 이를 祠로 하고 장수당을 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懸額하였다.<sup>43)</sup> 초기의 齋生은 20명이었으나 후에 15인 늘려 35인이 되었다.

40)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十一年 春判官趙仁後 建冲庵廟于嘉樂川東」

41) 林梯 《南溟小乘》, 「金先生祠宇成 趙侯屬余記之」

李元鎮 前揭書, 詞廟條.

42) 金錫翼, 前揭書, 「牧使李禴建藏修堂 是因金晉鎔 議遂建學堂于南城内 高得宗 舊基 扁藏修仍興學事」

43) 上揭書, 「(顯宗) 六年 判官崔鎮南 移建冲庵廟 于藏修堂南 揭額橋林書院」

현종 10년(1669)에는 金尚憲과 鄭蘊을 배향하여 숙종 1년(1675) 三臣의 서원으로 賜額을 요청해 보지만 비변사에 의해 거절되었다.<sup>44)</sup> 숙종 8년(1682)에 가서야 宋麟壽를 배향하면서 四臣書院으로 사액되어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sup>45)</sup> 숙종 21년(1695)에는 宋時烈을 배향함으로써 五賢配享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sup>46)</sup> 풀림서원의 체제는 院長 외에 掌儀 1명, 有司 2명이 있었고 학생 수는 正祖代의 邑誌에 의하면 額內院生 30명, 額外院生 36명, 別置居接生 20명으로 되어 있었다.

## 2) 配享의 意味

서원이란 書齋學校와 先賢先師를 제사 지내는 祠廟를 합친 것으로서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서당이나 書齋, 精舍 등과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祠宇, 鄉賢祠와는 다르다. 특히 선현의 奉祀는 곧 그 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문묘종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다.<sup>47)</sup>

유현배향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결속은 교육에 의해 더욱 발전, 계승되었으며 특히 지방 사풍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향사에도 사액, 非사액의 구분이 있어 향사의 경중이 달랐는데 祠典의 경중으로 보면 문묘보다 한

44) 《肅宗實錄》元年 9月 庚戌 「三臣書院亦宜宜額 下備局 備局回啓 言賜額事重有難輕議」

45) 金錫翼, 前揭書, 「肅宗 八年…以宋麟壽 金尚憲 鄭蘊 從享于冲庵廟 似宜額曰橋林書院」

46) 上揭書, 「二十一年 以文正公宋時烈 從享于橋林書院 宋時烈 字英甫 號尤菴 恩津人 己巳春淪 謫本州 踰月被逮 繼受後命于中道 官左議政從祀文廟」

47) 書院享祀의 내용을 《典故大方》書院享祀條에 의거하여 書院의 數와 享祀人物의 數를 통계내어 보면 書院의 數는 賜額書院이 205곳이고 非賜額書院이 196곳으로 모두 401곳이다. 여기서 享祀되어 있는 人物의 數는 賜額書院이 290인, 非賜額書院이 397인으로 모두 687명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享祀되어 있는 儒賢은 退溪가 31곳, 宋時烈이 28곳 그리고 栗谷이 20곳의 순으로 되어 있다.

등급 낮은 것이 사액서원 향사였고 또 한 등급 낮은 것이 非사액서원 향사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원향사를 둘러싸고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현종 9년(1668) 李璥 목사가 굴림서원에 그의 조부인 李約東을 배향케 하였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인 목사가 私情에 의하여 妄作한 것이라 하여 숙종 1년(1675) 李選 어사의 訴에 의해 位版이 철거<sup>48)</sup>되기는 했지만 이렇듯 향사인물의 선정에 따른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송시열이 향사되던 숙종 21년은 이조판서 尹趾善이 서원철폐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지방관과 감사의 논죄를 청하자 국왕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하에 서원철폐가 금지되었던 시기로 향사인물 선정금령이 엄격하던<sup>49)</sup>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굴림서원의 경우는 쉽게 배향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유현배향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시대정신의 교육적 표현을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찾고자 했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嚴然若見其人)하여 뒤의 학자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感發興起케 하려는 교육적 의미인 것이다.

서원향사에 있어서 사액과 非사액은 그 경중이 달랐다. 제주도의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이었다. 사액이 되면 자연적으로 공인서원이 되어 전답과 노비 및 서책의 일정량을 동시에 하사받으며 서원의 재정을 국가에서 보충받게 되기 때문에 사액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더욱이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은 숙종 초의 분위기는 사액을 통한 서원 보호책에 대하여 증신들 간에 강력한 반발이 일기 시작하던 때<sup>50)</sup>였으니 만큼 더욱

48) 《肅宗實錄》元年 9月 庚戌 「牧使李璥又以其祖父李約東不議於士林置之三賢之上有辱三賢莫此爲甚不當仍置…李璥置其祖於三臣之上不無循私妄作之迹位版使之撤去上允之」

49) 《肅宗實錄》21年 6月 壬辰條 「吏曹判書尹趾善 仍陳書院求請之弊 請禁疊設 左議政柳尚運 又請 如有疊設新建之祠 則地方官及監司論罪之事 定式施行 上皆許之」

50) 《肅宗實錄》肅宗 2年 10月 甲戌條에 「尙州儒生李在憲等上疏曰 嶺南卽東方之濼洛也 麗朝文忠公鄭夢周本朝文敬公金宏弼文獻公鄭汝昌文元公李彥迪文純公

더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정치적 여건에 따른 희유 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다.<sup>51)</sup>

나라에서 사액을 내리고자 할 때는 弘文館의 大提學 또는 副提學과 같은 명망있는 학자관원이 먼저 그 서원 院號에 알맞는 候補額號 셋을 선정하여 국왕에게 올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備三望이라고 부르며 국왕은 이 三望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명명하는데 이를 落點이라 하였다. 이렇게 액호가 결정되면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위촉하여 쓰게 하고 현판이 내려 갈 때는 禮曹佐郎을 보내어 致祭토록 하였다.

이 때에 그 지방의 수령 방백은 모두 이를 맞이하여야 하며 더욱이 御筆로써 사액을 내리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름난 刻手로 하여금 그 액을 刻하도록 하고 그 원본이 서원으로 奉安될 때는 의장대와 악대를 동원하여 그 威儀를 돋우게 하였다. 굴림서원은 숙종 8년에 정식으로 宣額되고 예조좌랑 安健之가 내려와 치재를 하였다.<sup>52)</sup>

사액 즉 왕의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서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면세, 면역의 특전을 향유한다는 실질적인 이득이 따랐다. 물론 이것이 정치경제적인 역기능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원 정비의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제주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 다. 三姓祠

李滉等五賢 先後輩出 萬曆甲午文肅公鄭經世 謀建學宮 合祀五賢 所謂道南書院是爾… 恩賜未實 乞允所望 使儒賢俎豆之地 衣被榮光… (禮曹) 判書李元翼以爲 此八賢各建書院 皆賜額號 而先朝有書院疊設之禁 今不可疊設賜額號… 領議政許積筵曰 禮曹防啓措語過矣 此院與他異 圖隱及我朝四賢 皆文明從祀人也 且柳成龍鄭經世 相議建設 如此者先朝亦皆賜額矣 上特命賜額」이라 하였다.

- 51) 《肅宗實錄》 38卷 八年, 6月 己亥 「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濟州儒生 以文簡公金淨參判鄭龜 嘗謫居島中 文忠公宋麟壽爲本州牧使 文正公金尚憲以巡撫御史入來 島中瓶建四臣書院 上疏請額該曹以疊設前例防啓矣 錫胄奏四臣俱有文學名節 而海外之人 能知尊慕此爲可嘉 不可與陸地近眼 紛耘疊設者比也 上特許賜額」
- 52) 金錫翼, 前掲書 「以宋麟壽 金尚憲 鄭龜 從享于沖庵廟 卽宜額曰橋林書院 乃遣禮郎安健之來致祭」

제주도의 서원 가운데 충절서원의 형식을 띤 것으로 삼성사가 있다. 원래 삼성사는 숙종 24년(1698) 柳漢明 목사가 三姓穴 동 쪽에 三乙那廟를 건립하자<sup>53)</sup> 숙종 28년(1702)에 李衡祥 목사에 의해 嘉樂川 동 쪽으로 옮기어져 춘추로 제사가 지내졌고<sup>54)</sup> 삼성사가 서원으로 발전한 것은 영조 16년(1740) 安慶運 목사가 齋生을 두면서였다.<sup>55)</sup> 그리하여 이 곳에도 祠와 齋가 갖추어졌고 정조 9년(1785)에 사액되었다.<sup>56)</sup>

서원의 체제는 읍지에 의하면 장의 1인, 유사 2인이고 학생 수는 액내원생이 30명 액외원생이 70명이었다. 순조 27년(1827) 이행교 목사에 의하여 전사청이 건립되고 헌종 15년(1848)에 장인식 목사에 의하여 승보당이 건립되었다.

굴림서원 배향 유현이 모두 외지인들임을 감안할 때 소위 始祖神으로서 高, 良, 夫 3인의 배향은 제주인의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되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다. 시조신의 배향 문제는 교육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애국교육(patriotic education)의 전통과 관련이 깊다. 애국교육은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혈연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조상의 땅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태어난 땅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는 고대교육의 전형이다.

이러한 애국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결속으로서 그러한 결속을 다지는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조신의 배향과 같은 연대행사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따라서 삼성사의 건립은 제주인의 자존과 자립, 자주와도 관련된 문제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三姓時代를 태평시절로 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주인들의 교육적 바램이 제도화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 4. 其他 教育施設

53) 上揭書, 「(肅宗)二十四年春 牧使柳漢明 建三乙那廟於毛興穴東邊」

54) 上揭書, 「(肅宗)二十八年 牧使李衡祥 移建三乙那廟於嘉樂川東 於三高氏從享」

55) 上揭書, 「(英祖)十六年 牧使安慶運 設三乙那廟生及齋任」

56) 上揭書, 「正祖九年春 遣禮郎高宅謙來 致祭三乙那廟 初州人梁攀天謫吉州 蒙宥回路 上言請賜額 王特命校理高宅謙 爲禮官致祭 因宣額曰三姓祠 御筆 揭扁」

제주도에 제일 먼저 생긴 사설 교육기관으로는 중종 29년(1534) 목사 沈連源이 세웠던 鄉學堂<sup>57)</sup>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폐쇄되자 林亨秀 목사는 인종 원년(1544)에 부임 金寧 포구 위에 金寧精舍를 지어 東學이라 하고 明月城 서 쪽에는 月溪精舍를 지어 西學이라 하여 학생들을 모아 교육시켰다.<sup>58)</sup>

일반적으로 정사라 함은 명망이 높은 儒士가 처음부터 仕宦에 뜻이 없어 閑雲野鶴과 더불어 초야에 묻혀 있거나, 또는 벼슬을 살다가도 歸田園하여 그의 鄉里나 風光이 明眉한 곳을 골라 隱居, 藏修의 자리를 열면 그를 흠모하는 志學의 청소년들이 찾아와 問道, 執擘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私塾(사설 아카데미)이었다. 따라서 그 명칭은 대개 그 지명이나 경승의 특징 또는 그 주인의 雅號와 越向하는 바를 따라서 택정하였다.

정사는 보통 名儒가 창건한 講學의 書齋이기 때문에 그의 歿後門인들이 서원으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퇴계의 隴雲精舍와 울곡의 隱屏精舍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정사가 서원으로 발전, 변모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향학당이나 김녕정사, 월계정사는 일종의 私置書齋의 書齋의 書堂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종조나 인종조는 서당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조선 국가체제에 편입되어 재지 농민교화의 기능을 맡게 된 촌락교화 서당으로 발전하였던 시기로서 동리에서 문자를 터득한 자를 택하여 學長을 주고, 지방장관이 이를 論賞하여 교육을 권장하는 등 국가의 뒷받침으로 지방장관이 밀접하게 관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沈連源은 金良弼을 학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서당의 성질은 이후 변모되어 독자적으로 在地민중의 교육적 욕구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는데 安居講學을 행하는 이전의 서재서당과는 달리 일반 서민의 자치적 성격을 내포한 서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활발해진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개념이 내실적으로 확대되었

57) 上揭書, 「(中宗二十九年)冬 牧使沈連源建鄉學堂于南城内」

58) 李元鎮, 前揭書, 「月溪精舍在明月城西 金寧精舍在金寧浦上 月溪爲西學 分校生爲附近居者讀書于 此擢土人之學文者 爲師長」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어도 초등교육이라는 영역이 구체화되었음을 뜻한다.

영조 12년(1736) 金倣 목사는 동쪽 政안에 三泉書堂을 설립하고 齋生 15인을 가려 耨료를 주면서 교육시켰는데 제주도의 사설 교육기관으로는 교육활동이 가장 활발했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배출시켜 張漢喆이나 吳靄, 愼尚欽 그리고 吳泰穆, 安永綬, 金亮洙 등이 거쳐갔다.<sup>59)</sup> 삼천서당의 설립과 함께 서당 설립 움직임이 제주삼읍에서 일어나는데 정조 2년(1778) 정의서당이 설립<sup>60)</sup> 되고 동왕 19년(1795) 대정서당이 설립된다.<sup>61)</sup>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설 교육기관 설립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순조 31년(1831)에 李禮廷 목사가 左右學堂을 세워 재생과 耨료를 두었는데 좌는 細花에 있었고 우는 明月에 있었다.<sup>62)</sup> 또한 동왕 33년(1833) 韓應浩 목사는 南西學堂을 세웠으니 남은 梧登에 있었고 서는 上加에 있었다.<sup>63)</sup>

그런데 서당이라는 것이 종래의 여러 교육기관에 비해 이질성을 갖고 있지만 같은 국민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특권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즈음<sup>64)</sup>으로 특권적인 보호는 특히 軍役 면제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조조에 생긴 四學堂에는 재생들이 교육 때문에도 출입하였지만 軍役을 면하기 위한 구실이 보다 더 컸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종 12년(1846) 李宜植 목사는 남서학당과 우학당 등 三學堂을 폐지하고 학당의 학생을 高강케 하여 학생들을 선별하였다.<sup>65)</sup>

59) 金錫翼, 《破閒錄》, 「英廟丙辰牧使金蘆峯倣設三泉書堂于東城內간齋生十五人置耨料以教凡民俊秀南方右文之會可謂盛矣前有張縣令漢喆吳生員靄愼參判尚欽後有吳進士泰穆安進士永綬金進士亮洙而文士有名不以藏修堂之盛也」

60) 金錫翼, 《耽羅紀年》, 「(正祖)二年…設三邑學田教士 因建旌義書堂 以廢場稅穀補諸生耨料」

61) 上揭書, 「(正祖)十九年…是歲 大靜縣監高漢祚 設書堂于城中 捐月耨勸諸生」

62) 上揭書, 「(純祖)三十一年牧使李禮延建左右學堂 東在細花西在明月設齋耨料」

63) 上揭書, 「(純祖)三十三年 春 牧使韓應浩 建南西學堂 南在梧登 西在上加」

64) 渡部學, 《近世教育史研究》, 東京: 雄山閣, 1970, p.334.

65) 金錫翼, 前揭書, 「(憲宗)十二年 牧使李宜植…罷南西右三學堂 查櫛三學齋生試講 以充踐役」